현대엔지니어링

청주 센트럴 스퀘어 근린생활시설 분양공고

힐스테이트

■ 건축허가 : 본 건축물은「건축법」제11조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임. [충청북도 청주시청 2020-건축디자인과-신축허가-36](2020.09.04)

■ 착공신고 : 충청북도 청주시청 건축디자인과-14978(착공신고필증 2021.07.20)

■ 분양신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청주시청 [2022-건축디자인과-분양신고-0003호. 2022.07.07]

■ 사업관계자 (시행위탁사, 시공사, 분양대행사, 분양사업자 겸 시행수탁사)

구분	분양사업자 겸 시행수탁사	시행위탁사	시공사	분양대행사
회사명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주식회사 청주고속터미널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식회사 산하이앤씨
법인등록번호	110111-2867418	150111-0096079	110111-2153015	110111-5680502

■ 공급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416번지

■ 공급규모 및 내역 : 지상 6층, 지상 7층 근린생활시설 63실

- 대지면적 : 총 12,672.90㎡
- 건축물 연면적 : 총 166,149.86㎡ 중 근린생활시설 분양면적 8,786.29㎡
- 본 건축물은 생활숙박시설, 운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영화관), 근린생활시설 등의 시설이 복합되어 계획될 예정입니다.

■ 건축물의 대지에 관한 사항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복대가경사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
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 해당 없음

■ 건축물 층별 용도

구 분	주 요 용 도
지하7층~지하1층	주차장, 기계실, 하역장
지상1층	운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판매시설, 생활숙박시설
지상2층~5층	판매시설
지상6층~7층	문화 및 집회시설(영화관), 근린생활시설(영화관), 근린생활시설, 생활숙박시설
지상8층~21층, 지상23층~49층	생활숙박시설
지상 22층	피난안전구역, 저수조, 소화수조, 휀룸

■ 내진설계에 관한 사항

- 본 건축물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1항 제5의2호 규정에 의거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하였음.

지진구역계수(S)	지반의 종류	중요도계수(IE)	내진설계범주	건축물의 중요도	반응수정계수(R)
0.185	S_2	1.2	C	1등급	5.0

※ 건축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여부 : 확보
※ 건축법 제48조의3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내진능력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Ⅶ-0.207g

■ 분양대금의 관리

- 본 사업은 분양사업자 겸 시행수탁사인 주식회사 무궁화신탁과 시행위탁사 주식회사 청주고속터미널 간의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에서 분양대금을 관리합니다.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은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관리만을 담당하며 매도인으로서의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공급계약서 상의 매도인으로서의 일체의 책임은 실질적인 분양사업자 주식회사 청주고속터미널에 있으며,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은 분양계약이행 및 분양대금의 반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근린생활시설은 2021.01.01. 시행된「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 동 법률 제6조의3 제1항 규정에 의거 본 근린생활시설은 전매가 가능합니다. 단, 동법률 제6조의3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인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률 제10조 제2항의 제5호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추후 관계법령의 변경에 의한 전매에 대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이전 분양권 권리양도는 관련법령에 따라 가능하나 계약금(10%) 완납 후시행위탁사 및 시행수탁사에 대한 채무이행 및 사업관계자가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정당계약 이후 미계약 잔여호실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분양될 예정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책임은 수분양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자 우선 분양

- 본 시설은 분양신고 접수일 기준「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으로서「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공급 실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분양분을 거주자 우선 분양 대상으로 합니다. (1인 1실 기준)

■ 본근린생활시설의 분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내용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또는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공급대상 : 근린생활시설 63실

(단위 : ㎡)

건축용도	층수	호실	실별 계약면적							대지지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소계	기계/전기실 등	주차장	소계		
근린생활시설	지상6층	601	38.0000	33.9800	71.9800	3.3600	28.2000	31.5600	103.5400	5.8400
		602	40.2600	36.0000	76.2600	3.5600	29.8800	33.4400	109.7000	6.1900
		603	70.9100	63.4100	134.3200	6.2600	52.6200	58.8800	193.2000	10.9100
		604	56.5500	50.5700	107.1200	4.9900	41.9700	46.9600	154.0800	8.7000
		605	65.3300	58.4200	123.7500	5.7700	48.4800	54.2500	178.0000	10.0500
		606	53.3500	47.7000	101.0500	4.7100	39.5900	44.3000	145.3500	8.2000
		607	24.8000	22.1800	46.9800	2.1900	18.4000	20.5900	67.5700	3.8100
		608	44.7100	39.9800	84.6900	3.9500	33.1800	37.1300	121.8200	6.8800
		609	31.2800	27.9700	59.2500	2.7600	23.2100	25.9700	85.2200	4.8100
		610	38.2500	34.2000	72.4500	3.3800	28.3800	31.7600	104.2100	5.8800
		611	59.7000	53.3800	113.0800	5.2700	44.3000	49.5700	162.6500	9.1800
		612	71.0400	63.5200	134.5600	6.2700	52.7200	58.9900	193.5500	10.9300
		613	31.5400	28.2000	59.7400	2.7900	23.4100	26.2000	85.9400	4.8500
		614	37.6300	33.6500	71.2800	3.3200	27.9200	31.2400	102.5200	5.7900
		615	74.2100	66.3600	140.5700	6.5600	55.0700	61.6300	202.2000	11.4100
		616	16.6300	14.8700	31.5000	1.4700	12.3400	13.8100	45.3100	2.5600
		617	14.6300	13.0800	27.7100	1.2900	10.8600	12.1500	39.8600	2.2500
		618	50.3800	45.0500	95.4300	4.4500	37.3900	41.8400	137.2700	7.7500
		619	41.1300	36.7800	77.9100	3.6300	30.5200	34.1500	112.0600	6.3300
		620	44.5700	39.8500	84.4200	3.9400	33.0700	37.0100	121.4300	6.8600
		621	53.9300	48.2200	102.1500	4.7600	40.0200	44.7800	146.9300	8.2900
		622	91.6500	81.9500	173.6000	8.1000	68.0100	76.1100	249.7100	14.1000
		623	28.0400	25.0700	53.1100	2.4800	20.8100	23.2900	76.4000	4.3100
		624	28.0400	25.0700	53.1100	2.4800	20.8100	23.2900	76.4000	4.3100
		625	32.7000	29.2400	61.9400	2.8900	24.2700	27.1600	89.1000	5.0300
		626	64.2600	57.4600	121.7200	5.6800	47.6900	53.3700	175.0900	9.8800
		627	63.2400	56.5500	119.7900	5.5900	46.9300	52.5200	172.3100	9.7300
		628	75.4800	67.4900	142.9700	6.6700	56.0100	62.6800	205.6500	11.6100
		629	89.7000	80.2100	169.9100	7.9200	66.5700	74.4900	244.4000	13.8000
		630	78.8700	70.5200	149.3900	6.9700	58.5300	65.5000	214.8900	12.1300
근린생활시설	지상7층	701	29.2300	26.1400	55.3700	2.5800	21.6900	24.2700	79.6400	4.5000
		702	54.1300	48.4000	102.5300	4.7800	40.1700	44.9500	147.4800	8.3300
		703	96.5600	86.3400	182.9000	8.5300	71.6600	80.1900	263.0900	14.8500
		704	35.1000	31.3800	66.4800	3.1000	26.0500	29.1500	95.6300	5.4000
		705	25.9000	23.1600	49.0600	2.2900	19.2200	21.5100	70.5700	3.9800
		706	25.9000	23.1600	49.0600	2.2900	19.2200	21.5100	70.5700	3.9800
		707	30.4000	27.1800	57.5800	2.6900	22.5600	25.2500	82.8300	4.6800
		708	27.9800	25.0200	53.0000	2.4700	20.7600	23.2300	76.2300	4.3000
		709	38.2000	34.1600	72.3600	3.3800	28.3500	31.7300	104.0900	5.8700
		710	36.3300	32.4900	68.8200	3.2100	26.9600	30.1700	98.9900	5.5900
		711	37.8000	33.8000	71.6000	3.3400	28.0500	31.3900	102.9900	5.8100
		712	43.4000	38.8100	82.2100	3.8300	32.2100	36.0400	118.2500	6.6700
		713	32.6000	29.1500	61.7500	2.8800	24.1900	27.0700	88.8200	5.0100
		714	33.6000	30.0400	63.6400	2.9700	24.9300	27.9000	91.5400	5.1700
		715	32.8100	29.3400	62.1500	2.9000	24.3500	27.2500	89.4000	5.0500
		716	34.4100	30.7700	65.1800	3.0400	25.5300	28.5700	93.7500	5.2900
		717	42.6000	38.0900	80.6900	3.7600	31.6100	35.3700	116.0600	6.5500
		718	26.1800	23.4100	49.5900	2.3100	19.4300	21.7400	71.3300	4.0300
		719	50.0300	44.7400	94.7700	4.4200	37.1300	41.5500	136.3200	7.6900
		720	49.3500	44.1300	93.4800	4.3600	36.6200	40.9800	134.4600	7.5900
		721	46.6800	41.7400	88.4200	4.1200	34.6400	38.7600	127.1800	7.1800
		722	46.6800	41.7400	88.4200	4.1200	34.6400	38.7600	127.1800	7.1800
		723	48.7400	43.5800	92.3200	4.3100	36.1700	40.4800	132.8000	7.5000
		724	96.4000	86.2000	182.6000	8.5200	71.5400	80.0600	262.6600	14.8300
		725	135.0900	120.7900	255.8800	11.9300	100.2500	112.1800	368.0600	20.7800
		726	112.2000	100.3300	212.5300	9.9100	83.2600	93.1700	305.7000	17.2600
		727	77.5200	69.3200	146.8400	6.8500	57.5300	64.3800	211.2200	11.9200
		728	73.8300	66.0200	139.8500	6.5200	54.7900	61.3100	201.1600	11.3500
		729	19.3800	17.3300	36.7100	1.7100	14.3800	16.0900	52.8000	2.9800
		730	63.8400	57.0800	120.9200	5.6400	47.3700	53.0100	173.9300	9.8200
		731	63.2400	56.5500	119.7900	5.5900	46.9300	52.5200	172.3100	9.7300
		732	63.2400	56.5500	119.7900	5.5900	46.9300	52.5200	172.3100	9.7300
		733	84.6300	75.6700	160.3000	7.4800	62.8000	70.2800	230.5800	13.0200

※ 전용면적은「건축법」및「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벽체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벽체가 없는 일부 호실의 경우 전용부 바닥구획선의 외부 끝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공용면적은 계단실, 복도, 화장실 면적 등이 포함되어 있고 기타공용면적에는 주차장, 건축설비실(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등), 관리실(MDF실, 방재실 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용면적과 대지지분은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되어 있습니다.
※ 상기면적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2째 자리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호실별 소수점 이하 면적 및 대지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분양가격을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유사·동일형태의 경우라도 해당 실 공용부분은 형태 및 면적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건축용도	군	층	호실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40%)				잔금(5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합계	계약시	1차(10%)	2차(10%)	3차(10%)	4차(10%)	입주예정일
									2023.03.25.	2023.09.25.	2024.03.25.	2024.09.25.	
근린생활시설	묶음(6가)	지상 6층	601	101,161,000	375,490,000	37,549,000	514,200,000	51,420,000	51,420,000	51,420,000	51,420,000	51,420,000	257,100,000
	묶음(6가)	지상 6층	602	102,065,000	378,850,000	37,885,000	518,800,000	51,880,000	51,880,000	51,880,000	51,880,000	51,880,000	259,400,000
	개별	지상 6층	603	168,992,000	627,280,000	62,728,000	859,000,000	85,900,000	85,900,000	85,900,000	85,900,000	85,900,000	429,500,000
	개별	지상 6층	604	117,571,000	436,390,000	43,639,000	597,600,000	59,760,000	59,760,000	59,760,000	59,760,000	59,760,000	298,800,000
	개별	지상 6층	605	135,812,000	504,080,000	50,408,000	690,300,000	69,030,000	69,030,000	69,030,000	69,030,000	69,030,000	345,150,000
	개별	지상 6층	606	110,896,000	411,640,000	41,164,000	563,700,000	56,370,000	56,370,000	56,370,000	56,370,000	56,370,000	281,850,000
	개별	지상 6층	607	57,215,000	212,350,000	21,235,000	290,800,000	29,080,000	29,080,000	29,080,000	29,080,000	29,080,000	145,400,000
	개별	지상 6층	608	106,550,000	395,500,000	39,550,000	541,600,000	54,160,000	54,160,000	54,160,000	54,160,000	54,160,000	270,800,000
	개별	지상 6층	609	72,165,000	267,850,000	26,785,000	366,800,000	36,680,000	36,680,000	36,680,000	36,680,000	36,680,000	183,400,000
	개별	지상 6층	610	91,148,000	338,320,000	33,832,000	463,300,000	46,330,000	46,330,000	46,330,000	46,330,000	46,330,000	231,650,000
	개별	지상 6층	611	146,799,000	544,910,000	54,491,000	746,200,000	74,620,000	74,620,000	74,620,000	74,620,000	74,620,000	373,100,000
	개별	지상 6층	612	174,705,000	648,450,000	64,845,000	888,000,000	88,800,000	88,800,000	88,800,000	88,800,000	88,800,000	444,000,000
	묶음(6나)	지상 6층	613	72,768,000	270,120,000	27,012,000	369,900,000	36,990,000	36,990,000	36,990,000	36,990,000	36,990,000	184,950,000
	묶음(6나)	지상 6층	614	89,676,000	332,840,000	33,284,000	455,800,000	45,580,000	45,580,000	45,580,000	45,580,000	45,580,000	227,900,000
	개별	지상 6층	615	176,849,000	656,410,000	65,641,000	898,900,000	89,890,000	89,890,000	89,890,000	89,890,000	89,890,000	449,450,000
	개별	지상 6층	616	39,623,000	147,070,000	14,707,000	201,400,000	20,140,000	20,140,000	20,140,000	20,140,000	20,140,000	100,700,000
	개별	지상 6층	617	32,635,000	121,150,000	12,115,000	165,900,000	16,590,000	16,590,000	16,590,000	16,590,000	16,590,000	82,950,000
	개별	지상 6층	618	112,391,000	417,190,000	41,719,000	571,300,000	57,130,000	57,130,000	57,130,000	57,130,000	57,130,000	285,650,000
	개별	지상 6층	619	98,009,000	363,810,000	36,381,000	498,200,000	49,820,000	49,820,000	49,820,000	49,820,000	49,820,000	249,100,000
	거주자우선	지상 6층	620	96,050,000	356,500,000	35,650,000	488,200,000	48,820,000	48,820,000	48,820,000	48,820,000	48,820,000	244,100,000
	거주자우선	지상 6층	621	108,010,000	400,900,000	40,090,000	549,000,000	54,900,000	54,900,000	54,900,000	54,900,000	54,900,000	274,500,000
	거주자우선	지상 6층	622	197,501,000	733,090,000	73,309,000	1,003,900,000	100,390,000	100,390,000	100,390,000	100,390,000	100,390,000	501,950,000
	개별	지상 6층	623	66,834,000	248,060,000	24,806,000	339,700,000	33,970,000	33,970,000	33,970,000	33,970,000	33,970,000	169,850,000
	개별	지상 6층	624	66,834,000	248,060,000	24,806,000	339,700,000	33,970,000	33,970,000	33,970,000	33,970,000	33,970,000	169,850,000
	개별	지상 6층	625	80,405,000	298,450,000	29,845,000	408,700,000	40,870,000	40,870,000	40,870,000	40,870,000	40,870,000	204,350,000
	묶음(6다)	지상 6층	626	171,066,000	634,940,000	63,494,000	869,500,000	86,950,000	86,950,000	86,950,000	86,950,000	86,950,000	434,750,000
	묶음(6다)	지상 6층	627	160,323,000	595,070,000	59,507,000	814,900,000	81,490,000	81,490,000	81,490,000	81,490,000	81,490,000	407,450,000
	묶음(6다)	지상 6층	628	200,931,000	745,790,000	74,579,000	1,021,300,000	102,130,000	102,130,000	102,130,000	102,130,000	102,130,000	510,650,000
	개별	지상 6층	629	238,781,000	886,290,000	88,629,000	1,213,700,000	121,370,000	121,370,000	121,370,000	121,370,000	121,370,000	606,850,000
	개별	지상 6층	630	199,958,000	742,220,000	74,222,000	1,016,400,000	101,640,000	101,640,000	101,640,000	101,640,000	101,640,000	508,200,000
근린생활시설	묶음(7가)	지상 7층	701	64,841,000	240,690,000	24,069,000	329,600,000	32,960,000	32,960,000	32,960,000	32,960,000	32,960,000	164,800,000
	묶음(7가)	지상 7층	702	104,070,000	386,300,000	38,630,000	529,0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264,500,000
	개별	지상 7층	703	179,526,000	666,340,000	66,634,000	912,500,000	91,250,000	91,250,000	91,250,000	91,250,000	91,250,000	456,250,000
	개별	지상 7층	704	58,583,000	217,470,000	21,747,000	297,800,000	29,780,000	29,780,000	29,780,000	29,780,000	29,780,000	148,900,000
	개별	지상 7층	705	43,227,000	160,430,000	16,043,000	219,700,000	21,970,000	21,970,000	21,970,000	21,970,000	21,970,000	109,850,000
	개별	지상 7층	706	43,227,000	160,430,000	16,043,000	219,700,000	21,970,000	21,970,000	21,970,000	21,970,000	21,970,000	109,850,000
	개별	지상 7층	707	58,455,000	216,950,000	21,695,000	297,10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148,550,000
	개별	지상 7층	708	52,012,000	193,080,000	19,308,000	264,400,000	26,440,000	26,440,000	26,440,000	26,440,000	26,440,000	132,200,000
	개별	지상 7층	709	73,440,000	272,600,000	27,260,000	373,300,000	37,330,000	37,330,000	37,330,000	37,330,000	37,330,000	186,650,000
	묶음(7나)	지상 7층	710	69,836,000	259,240,000	25,924,000	355,0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177,500,000
	묶음(7나)	지상 7층	711	72,675,000	269,750,000	26,975,000	369,400,000	36,940,000	36,940,000	36,940,000	36,940,000	36,940,000	184,700,000
	개별	지상 7층	712	83,441,000	309,690,000	30,969,000	424,100,000	42,410,000	42,410,000	42,410,000	42,410,000	42,410,000	212,050,000
	개별	지상 7층	713	64,748,000	240,320,000	24,032,000	329,100,000	32,910,000	32,910,000	32,910,000	32,910,000	32,910,000	164,550,000
	개별	지상 7층	714	66,730,000	247,700,000	24,770,000	339,200,000	33,920,000	33,920,000	33,920,000	33,920,000	33,920,000	169,600,000
	묶음(7다)	지상 7층	715	67,240,000	249,600,000	24,960,000	341,800,000	34,180,000	34,180,000	34,180,000	34,180,000	34,180,000	170,900,000
	묶음(7다)	지상 7층	716	63,983,000	237,470,000	23,747,000	325,200,000	32,520,000	32,520,000	32,520,000	32,520,000	32,520,000	162,600,000
	개별	지상 7층	717	81,900,000	304,000,000	30,400,000	416,300,000	41,630,000	41,630,000	41,630,000	41,630,000	41,630,000	208,150,000
	묶음(7라)	지상 7층	718	52,000,000	193,000,000	19,300,000	264,300,000	26,430,000	26,430,000	26,430,000	26,430,000	26,430,000	132,150,000
	묶음(7라)	지상 7층	719	96,189,000	357,010,000	35,701,000	488,900,000	48,890,000	48,890,000	48,890,000	48,890,000	48,890,000	244,450,000
	묶음(7라)	지상 7층	720	91,762,000	340,580,000	34,058,000	466,400,000	46,640,000	46,640,000	46,640,000	46,640,000	46,640,000	233,200,000
	묶음(7라)	지상 7층	721	86,779,000	322,110,000	32,211,000	441,100,000	44,110,000	44,110,000	44,110,000	44,110,000	44,110,000	220,550,000
	묶음(7라)	지상 7층	722	86,779,000	322,110,000	32,211,000	441,100,000	44,110,000	44,110,000	44,110,000	44,110,000	44,110,000	220,550,000
	묶음(7라)	지상 7층	723	90,615,000	336,350,000	33,635,000	460,600,000	46,060,000	46,060,000	46,060,000	46,060,000	46,060,000	230,300,000
	묶음(7라)	지상 7층	724	148,676,000	551,840,000	55,184,000	755,700,000	75,570,000	75,570,000	75,570,000	75,570,000	75,570,000	377,850,000
	묶음(7라)	지상 7층	725	225,477,000	836,930,000	83,693,000	1,146,100,000	114,610,000	114,610,000	114,610,000	114,610,000	114,610,000	573,050,000
	거주자우선	지상 7층	726	194,372,000	721,480,000	72,148,000	988,000,000	98,800,000	98,800,000	98,800,000	98,800,000	98,800,000	494,000,000
	거주자우선	지상 7층	727	149,024,000	553,160,000	55,316,000	757,500,000	75,750,000	75,750,000	75,750,000	75,750,000	75,750,000	378,750,000
	거주자우선	지상 7층	728	146,625,000	544,250,000	54,425,000	745,300,000	74,530,000	74,530,000	74,530,000	74,530,000	74,530,000	372,650,000
	개별	지상 7층	729	37,259,000	138,310,000	13,831,000	189,400,000	18,940,000	18,940,000	18,940,000	18,940,000	18,940,000	94,700,000
	개별	지상 7층	730	141,607,000	525,630,000	52,563,000	719,800,000	71,980,000	71,980,000	71,980,000	71,980,000	71,980,000	359,900,000
	개별	지상 7층	731	133,599,000	495,910,000	49,591,000	679,100,000	67,910,000	67,910,000	67,910,000	67,910,000	67,910,000	339,550,000
	개별	지상 7층	732	133,599,000	495,910,000	49,591,000	679,100,000	67,910,000	67,910,000	67,910,000	67,910,000	67,910,000	339,550,000
	개별	지상 7층	733	187,743,000	696,870,000	69,687,000	954,300,000	95,430,000	95,430,000	95,430,000	95,430,000	95,430,000	477,150,000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호실별 소유권 이전 관련비용 및 취·등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입니다.
※ 상기 납부일정은 시공 및 중도금 대출 등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준공예정일 : 2025년 04월 예정 (준공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일 : 별도 통지예정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정확한 입주예정일은 추후 통보 합니다. 입주예정일이 통보된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져 변경통지될 경우 변경된 실입주일에 맞추어 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에는 잔금 미납에 대한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암반발견, 문화재 발굴, 전염병,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 파동, 국가대란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예정일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거주자 우선 분양

- 거주자 우선공급은 청약신청자 중 분양공고일 기준 현재 청주시 거주자를 우선 대상으로 추첨하며, 우선공급 신청자 중 당첨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청약자에 포함합니다.
- 거주지역을 잘못 기재하여 청주시 거주 지역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관련서류(주민등록등본 등) 검토 후 청주시 거주가 아닌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되오니 이점 양지 하시어 청약신청 접수 바랍니다.
- 본 근린생활시설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의거하여 건축물 분양분의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 분양신고일(2022.07.07. 공고일과 다름) 현재 그 건축물의 건설지역 거주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로서 분양을 신청한 자 중 충청북도 청주시 거주자에게 1명당 1실을 기준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 우선공급 신청결과 경쟁 발생 시 사업관계자는 기준에 따라 당첨자를 전자 추첨하여 결정되며, 사업관계자는 개별적으로 당첨자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청주시 거주자 우선배정 호실 수**

공급호실	거주자 우선분양(청주시)	비고
63호실	6호실	주민등록등본 상 충청북도 청주시 거주자 우선 당첨자 선정

Ⅱ 청약신청

■ 청약일정 및 장소

구분	일시	장소
청약일시	2022.07.15.(금) ~ 2022.07.16.(토) 10:00 ~ 17:00 (2일간)	청주 센트럴시티 홈페이지 (http://www.cheongju-centralcity.co.kr)
당첨자발표	2022.07.19.(화) 15:00 이후	
당첨자 선정 및 층호수 결정방법	• 청주 센트럴 시티 청약 및 추첨 시스템을 통하여 당첨 호실을 결정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며, 이 경우 사업관계자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당첨자 확인	• 당첨자 확인은 홈페이지에서 개별열람이 가능하며, 별도 당첨자 통보를 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 및 착오안내 방지를 위해 유선상 확인이 불가합니다.	

※ 추첨 및 당첨자 발표는 청약신청 접수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청약 신청자격 등 고지사항

- 최초 분양공고일(2022.07.08.)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에 한합니다.
-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 여부, 주택청약순위와 무관하게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은 청주 센트럴시티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 진행됩니다. (단, 법인은 분양홍보관에서만 청약 접수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은 군별(개별호실, 거주자우선, 묶음호실별)로 접수하며, 1인(1개 법인)당 층별 구분 없이 2건으로 제한하되 묶음 군은 1건으로 산정합니다.
- 청약신청 1인(1개 법인) 3건 이상 청약 접수 시 부적격으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단, 거주자 우선 분양 호실은 1인 1호실로 제한합니다.
- 동일인이 동일군 또는 동일 호실 2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청약신청 전부를 무효처리합니다.
- 신청자격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 체결이 불가하고 계약 체결 이후에도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시스템을 통한 청약 시 정상 진행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신청 가능 건수를 초과할 시 청약 자체를 무효로 합니다.)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호실 발생 시 수의계약으로 공급합니다.

■ 청약신청 방식

- 접수방법 : 각 군별(개별호실, 거주자우선, 묶음) 또는 호실별로 구분하여 접수합니다.
- 접수일자 : 2022.07.15(금) ~ 16(토), 10:00 ~ 17:00
- 인터넷 청약신청 : 홈페이지 (http://www.cheongju-centralcity.co.kr) 내 청약센터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당 사업장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 질서의 확립 및 혼잡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인 인증절차를 위하여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마감시간까지 청약 신청을 최종 완료(입금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 시간 전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PC 및 모바일 접수 가능하나 스마트기기에 따라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니,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청약을 진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홈페이지 청약사이트의 서버다운 등으로 인해 상기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방법

http://www.cheongju-centralcity.co.kr 접속 ▶ 홈페이지 內 청약신청 배너 클릭 ▶ 청약자 본인인증 및 기본정보 등록 ▶ 청약신청 하고자 하는 단지·군·호실 선택 ▶ 청약 신청 ▶ 가상계좌 발급 ▶ 청약금 입금 ▶ 청약 완료

■ 청약신청금 및 납부계좌

군		청약금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수납방법
개별호실, 거주자우선		금 일천만원(₩10,000,000원)	하나은행	청약시 부여된 가상계좌	(주)무궁화신탁	무통장 입금
묶음호실	묶음(6가), 묶음(6나), 묶음(7가), 묶음(7나), 묶음(7다)	금 이천만원(₩20,000,000원)				
	묶음(6다)	금 삼천만원(₩30,000,000원)				
	묶음(7라)	금 팔천만원(₩80,000,000원)				

- 개인 청약신청자는 인터넷 청약시 신청자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청약신청금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 청약신청자와 청약금 환불계좌 예금주는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청약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청약신청금액 정상 납부 완료 시에는 청약 취소가 불가하며, 청약 후 추가 청약 또한 불가합니다. 단, 입금이 완료되기 전에는 청약변경이 가능하며, 청약 취소 후 재신청 하셔야 합니다.
※ 청약신청 시 청약신청 홈페이지의 청약 유의사항을 확인 후 청약신청 하시기 바라며, 청약신청자의 미확인으로 인한 문제는 사업관계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인(1개 법인)당 최대 2건의 청약만 가능하며, 2건 청약시 청약금은 동시에 입금하여야만 청약완료로 인정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청약신청은 무효처리 됩니다.
- 청약신청금은 청약신청일 해당 시간(10:00~17:00) 내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되지 않은 청약신청은 무효처리 됩니다.
- 상기 계좌 입금 외에는 어떠한 형태도 청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법인 청약신청자의 경우 별도로 안내받은 지정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청약 시 반드시 입금확인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 시 반드시 청약신청 호실 및 성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 601호 홍길동 청약 시 → 홍길동601
묶음 7가(730호, 731호) 홍길동 청약 시 → 홍길동7가
- 청약신청금 계좌는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다르며,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입금된 청약금은 인정되지 않고 잘못 입금된 청약금의 환불은 전체 청약금 환불예정일 이후에 진행됩니다.
- 지정계좌 이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홍보관 및 제3자에게 현금으로 직접 입금 또는 지급하는 방법으로 청약금을 납부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청약자에게 있습니다.

■ 청약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사 항
개인	• 홈페이지(http://www.cheongju-centralcity.co.kr) 내 청약신청 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청약신청 진행 합니다. • 청약신청금 입금 시 입금자명은 청약자명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금을 환불받을 계좌번호는 청약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타인 명의 환불 불가) - 2개 이상 군 또는 호실에 청약 시에는 군별 또는 호실별로 청약신청 및 청약신청금 입금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인	• 법인은 분양홍보관에서 현장청약만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청약신청서(분양홍보관 내 비치) - 법인인감 및 법인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부 제출) - 법인 대표이사 본인 신청 시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직원 및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지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청약신청금 납입 영수증(지정계좌 무통장 입금증 / 지정계좌는 현장 접수 시 별도로 안내) - 청약신청금 환급 받을 통장 사본 1부(청약신청 법인명의 통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분양공고일(2022.07.08.)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에는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 시 외국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청약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추첨일시 및 당첨자 발표 : 2022.07.19.(화) 15:00시 이후
- 청주 센트럴 시티 인터넷 청약 시스템(http://www.cheongju-centralcity.co.kr)에서 청약자 중 무작위 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당첨자 확인은 홈페이지(http://www.cheongju-centralcity.co.kr)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 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통보 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선정 후 서류심사 부적격자 발견 시 별도의 통지 없이 무효처리하며, 이에 어떠한 이의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금 환불 방법

- 환불예정일시 : 당첨자 발표 이후 10영업일 이내 (금융기관 영업일 기준)
- 환불방법 : 청약신청 시 홈페이지에 입력한 청약자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 처리합니다.
- 청약 신청 시 본인이 입력한 본인명의 환불계좌로만 환불 처리합니다. (환불계좌 오류 등 송금불능 사유 발생 시 환불일자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청약시 입력(제출)하신 계좌가 환불불가 및 압류계좌 등에 의한 계좌일 경우 사업관계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단, 당첨된 호실의 청약신청금 입금자와 계약자가 동일인에 한합니다.
- 청약신청금 환불은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신청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금 환불 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환불계좌 오류, 환불서류 미비 등 송금 불능 사유 발생 시 및 전산처리 절차에 따라 환불 일자가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청약신청자는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사업관계자에게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물의 층수, 향 등에 따라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조망권, 영업권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의 당첨 또는 취소 및 부적격 결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관계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금 환불은 청약신청 환불계좌로 등록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Ⅲ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구분	일시	장소
계약기간	2022년 07월 21일(목요일) ~ 23일(토요일) 10:00 ~ 17:00 (3일간)	청주 센트럴시티 홍보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35-23)
계약금 납부	• 아래의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 입금(호수 및 수 분양자 성명 기재)하여야 유효하며, 아래의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관계자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서 미작성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임의 분양할 수 있습니다. • 개별통보를 통한 계약안내는 하지 않으며, 착오 또는 당첨자 미확인으로 인한 미계약시 사업관계자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계좌번호	금융기관	예금주
계약금	543-910009-96004	하나은행	㈜무궁화신탁
중도금, 잔금	계약 체결 시 호실별 가상계좌 부여		

- 예금주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의거하여 공급대금을 관리합니다.
- 분양홍보관에서는 계약금을 포함한 일체의 대금을 수납하지 않으며,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시에 공급하는「힐스에비뉴 청주 센트럴」과 계좌번호가 상이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납부(계약시) : 호실 및 수분양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계약 시 분양홍보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분양홍보관 수납 불가)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관계자는 책임지지 않으며, 수분양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정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구비서류 미제출 또는 계약서 미날인 등으로 계약이 미체결 되거나, 계약서 날인 및 구비서류 제출을 완결하였더라도 계약금을 완납하지 않을 시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호실별로 상이한 가상계좌가 부여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관계자는 중도금, 잔금의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무통장 입금시 예시 : 702호를 계약한 홍길동 → 홍길동702
묶음 7가(730호, 731호) 계약한 홍길동 → 홍길동7가
※ 예시와 같이 입금자명이 명기되지 않을 경우 입금확인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한 손해는 수분양자에게 있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청약 신청계좌와 다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구분		구 비 사 항
본인 계약 시	공통	1. 계약자 인감도장 2. 계약자 인감증명서 1부(용도 : 근린생활시설 계약용, 본인발급용) 3. 주민등록등본 1통 4.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5.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부)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1부)
	거주자 우선공급	• 계약자의 주민등록표초본 1부(분양공고일 이후 발급용)
법인 계약 시	공통	1. 청약신청 접수(영수)증 2. 법인인감(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용도 : 계약용)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법인 대표이사 본인 계약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직원 및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7.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거주자 우선공급	• 사업자등록증명원(분양신고일 이후 발급용)
제3자 대리 계약 시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 추가 제출 1.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부(용도 : 계약 위임용) 2.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홍보관 내 양식 비치) 3. 대리인의 도장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분양공고일(2022.07.08.)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동일인의 계약이 여러 건인 경우 구비서류는 해당 건수 수량에 맞추어 준비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는 사업관계자가 전자수입인지 구입의 형태로 전체금액을 선납하고 계약자 부담분인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수분양자가 계약서 불출 전 청약금계좌에 호수와 수분 양자명의를 기재하여 입금하셔야 합니다.
※ 수분양자가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가 불출되지 않는 등 계약자의 권리행사에 제한이 있으며, 계약인지세 사본은 1회에 한하여 발급되며 이의 분실로 인한 수분양자의 손해에 대해서 사업관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지정계약기간 이후 미계약 잔여호실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거 사업관계자가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임의분양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가 부적격자로 무효처리된 호실은 미계약 잔여호실로 간주하여 지정계약기간 종료 이후 위 법률에 따라 임의분양할 수 있습니다.
- 지정계약기간내 계약서류 미완결 또는 계약금 미완납 등으로 계약을 포기한 호실은 미계약 잔여호실로 간주하여 지정계약기간 이후 위 법률에 따라 임의분양할 수 있습니다.
※ 미계약 잔여호실에 대한 분양조건(분양시기, 분양금액 등)은 시행위탁사가 임의로 결정하며,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안내

- 대출기관 : 추후 별도 공지 예정
- 대출금액 : 시행위탁사가 지정하여 공지할 금융기관에서 총 분양대금의 40% 범위 내에서 중도금 융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대출관련 세부일정 및 내용은 분양홍보관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정부의 대출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수분양자 별로 상이 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시행위탁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이자는 최초 입주예정일 전일까지는 시행위탁사에서 부담하며, 최초 입주예정일 이후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 및 원금은 계약자 부담입니다. (중도금대출 : 1~4회차 무이자 대출로서 총 분양대금의 40% 범위 내에서 알선하나, 계약금(총 분양대금의 10%) 및 잔금(총 분양대금의 50%)은 시행위탁사 및 시공사가 별도로 알선하지 않음으로 지정된 계좌로 수분양자가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 수분양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대출제한 등)변경, 국제금융 위기상황 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단대출 승인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중도금 대출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출이 제한될 경우 분양 대금을 수분양자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계자는 조달비용(이자 등)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세 등 제반 경비는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수분양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공급계약서상 명시된 연체요율에 의거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수분양자가 재외동포 및 외국인, 법인인 경우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수분양자의 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관계자는 어떠한 책임도 없으며, 분양대금을 수분양자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수분양자의 금융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발생으로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관계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해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수분양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분양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중복 계약자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건수, 금액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수분양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분양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행위탁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아니하거나 대출불가로 인한 자납, 본인자금조달, 입주지정기간전 중도금 대출 상환 등의 이유로 사업관계자에게 별도의 금액을 청구하거나 할인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신청기간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제한되어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공급계약서상 명시된 연체요율에 의거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이를 사유로 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의3(분양 건축물의 전매행위 제한) 제2항에 의거 분양사업자와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까지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어긴 경우「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10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10% 완납 후 시행위탁사, 시행수탁사, 시공사의 승인 후 전매가 가능합니다.
- 분양권 전매 시 지정된 일자 내에 전매 진행이 가능하며, 분양대금 미납, 연체료 미납, 대출 미승계시에는 전매가 불가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이전 분양권 권리양도는 가능하나 사업관계자에 대한 채무이행 및 사업관계자가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수분양자 및 분양권 양수인은 위「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매제한 내용을 확인한 후 법률위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시어 본인의 책임하에 권리의무승계를 하여야 하고, 설령 사업관계자가 권리의무 승계서류를 수령하거나 직인을 날인 하였더라도 이는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것이 아니며, 단지 권리의무승계 관련 신청서류를 수령하였음을 의미할 뿐이므로 전매제한과 관련 일체의 책임이 없으며 수분양자 및 분양권 양수인은 이와 관련하여 사업관계자에 대하여 민, 형사상 소송제기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분양권 전매는 수분양자가 사업관계자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수분양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 모두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조건입니다. 또한 분양권 전매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 문제는 수분양자 및 분양권 양수인의 책임입니다.
- 전매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물건 취득 인정 시(공급대금의 90% 이상 납부한 경우) 권리양도(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항에 의하지 아니한 양도, 이전 및 승계로 사업관계자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시 청약 당첨자의 명의로만 계약이 가능하며, 공동명의는 불가합니다.
- 분양금액은 호실별 면적, 층, 향, 구조, 이동동선, 호실별 조건 등을 감안하여 차등하여 책정되었으며, 이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해지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분양자에게 귀속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주민등록증 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으로 당첨 및 계약 체결 되었을 경우 당첨 및 계약취소, 고발조치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청약자 및 수분양자에게 귀속됩니다.
- 주변 및 인접부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관련사항(소음, 진동 등),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생활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등의 배치, 구조 및 층·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영업권,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분양홍보관, 평면도, 배치도 등 해당 도면의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수분양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입주예정일이 분양계약 체결 당시 고지한 입주예정일보다 3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수분양자는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후 부득이 수분양자의 귀책사유로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공급계약서에 따라 위약금(분양대금의 10%)을 공제합니다.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지정 계약일 이후 미분양 호실에 대한 면적, 공급금액 등은 관계 법령에 의거 하여 시행위탁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입주시기와 생활숙박시설의 입주 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 기타 관리비 및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임시관리규약 및 추후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에 따르며, 수분양자는 계약 체결과 동시 상기 계약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청주 센트럴시티」의 공식홈페이지(http://www.cheongju-centralcity.co.kr)에서 제공한 사항 이외의 정보(블로그, 각종 SNS, 개인홈페이지, 개인유튜브, 기타 부동산 등의 개인이 작성 또는 제공한 정보)는 시행위탁사 등 사업관계자와 무관하며 이를 근거로 별도의 요구나 이의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공급자가 분양대상 건축물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공급자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고 이행이 없을 경우 계약의 해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
②「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③「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 경우
- 기타 계약조건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Ⅳ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통 유의사항

- 청약·계약 전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일조, 진입로, 냄새 유발시설 등),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분양홍보관 내 비치된 평면도, 배치도 등을 통해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복도, 계단실, 주차장, 건축설비실 등 공용부분은 어떠한 경우라도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본인의 계약물건 외 시설에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에 사용된 시공사의 로고 및 사업주체의 브랜드는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면적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 단위인 ㎡로 표기하였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평형 환산법 = 면적 ㎡ × 0.3025 또는 면적 ㎡ / 3.3058)
- 면적은 소수점 4째자리까지 표현되며, 이 경우 면적 계산상 소수점 정산 방식으로 인해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당 사업지 내 생활숙박시설 및 운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은 각각 분양시설로서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청약, 전매, 재당첨 등에 관한 사항은 향후 관계법령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 중개 등)는 사업관계자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분양공고문 및 공급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공급계약서, 분양공고문, 기타 홍보물 순으로 우선 적용됩니다.
- 본 분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건축법」및「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의하며, 미명시된 사항은 공급계약서에 세부사항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 본 분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분양홍보관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과 관련된 공고 및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주변 환경 및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수분양자·입점자 협의회 등)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근린생활시설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건축물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건물을 비교하여 홍보관 및 건축허가승인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 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 (변경)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건축법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시행위탁사가 경미한 사항의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하지 않습니다.
- 건물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수분양자의 동의 없이 시행위탁사 및 시행수탁사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홍보관내 모형 및 광고물, 공급안내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인·허가 변경, 행정지도, 시공성 개선,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현장 주변여건과도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홍보관내 모형 및 광고물, 공급안내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의 가구와 장식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배치한 것으로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홍보관은 사업관계자의 판단에 따라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의 임의출입이나 중단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을 위해 사용된 각종 수치와 자료 등은 인쇄과정상 오탈자 혹은 오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실제 목적물은 준공도서에 기준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대금은 본 건물 신축사업의 대지비, 공사비 등 사업비 조달에 사용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층, 향, 위치, 구조 등을 감안하여 사업관계자가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호실별로 공급가가 상이하므로 분양홍보관에서 정확한 금액을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각 호실별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 취득세(기존세법상 등록세 포함)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분양가에 반영된 항목별 공사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수분양자의 유책사유(분양자격 위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수분양자 자격, 서류 결격, 2회 연속 납부연체 등)로 부득이 해약하는 경우 사업관계자는 해약조치 할 수 있으며, 계약조항에 따라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시고 청약 및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금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 체결 시 계약금 전액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본 시설의 중도금(40%)은 시행위탁사와 대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 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법인계약, 다호실계약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계약자 본인의 책임으로 본인이 직접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은 공사감리자의 공정확인서에 의하여 건축공사비(대지 매입비 등 제외)의 50% 이상 투입이 확인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에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공사감리자의 공정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은 지정된 시점에 납부 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주예정일 내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 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도 잔금(50%)을 실입주일 이전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금액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잔금을 실입주일에 맞추어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를 포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실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이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 시 공급 가격에 의해 정산 처리 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변동시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수분양자는 입주 시까지 거주지, 연락처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내용(주민등록등본 포함)을 시행위탁사 또는 시행수탁사에게 필히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하여 안내문 등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시행위탁사 또는 시행수탁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요구 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및「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으며, 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합니다.
- 계약 후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예정이며, 수분양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과세일반사업자)을 하여야 하며, 이후 분양대금 납부분부터는 시행위탁사가 수분양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단, 수분양자는 사업자등록 시 시행위탁사에게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사실을 통보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연락처(이메일주소)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 사실에 대한 미통보 및 통보지연, 사업자미등록, 부가세 미신고 및 누락 등의 사유로 인한 부가가치세 미환급에 대하여는 수분양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시행위탁사, 시행수탁사, 시공사, 분양대행사, 분양상담사는 분양상담 시 각 호실별 계약자에게 호실의 임대차 알선 및 임대수익률 확약을 하지 않으므로 향후 수분양·입주자는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해지 조치합니다. (이때 납부한 계약금 10%는 시행수탁사에게 귀속됩니다.)
- 수분양자는 소유권이전 완료 전 시행위탁사, 시행수탁사, 시공사의 승인 없이 계약호실에 대한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호실면적을 임의분할하여 타인에게 지분 등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 해당 지자체의 건축물대장 등록업무지침에 따라 최초건축물대장 등록 시 상가의 세부용도(업종)가 지정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세부용도(업종) 지정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영업업종은 법으로 허용된 사용용도 내 업종으로 개점하여야 하고, 입점 시 및 입점 후의 업종 중복에 대하여서는 수분양자 상호간에 협의하여 처리 하여야 하며, 시행위탁사 및 시행수탁사는 일체의 업종 보호책임이 없습니다.
- 분양공고일 현재 본 사업부지는 관계법률에 따른 학교시설 계획 관련사항은 없으나, 추후 해당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관계자와 무관한 정부 및 해당지자체 등의 정책변경 및 행정지도에 따라 각종 제세금, 용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를 사유로 계약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 및 신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를 착오 또는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을 이유로 사업관계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최초공급(분양)계약 등에 대해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해당 시군구청에 거래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수분양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 최초공급(분양)계약에 한하여 수분양자가 사업관계자에게 위탁한 경우 일괄 신고할 수 있으나, 그 외에는 당사자에게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 취득세는 납부원인이 발생한 날(통상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또는 영리목적 외국법인이 국내토지를 취득할 경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및「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라 적합한 절차와 기일내 신고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이나 미준수로 인한 과태료, 계약취소 등 일체의 손해에 대해 사업관계자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건축물 사용승인(준공) 후 관련법에 저촉되는 불법행위(호실내부 2층 및 계단설치, 무단증축, 개조,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책임은 수분양자 또는 입점자에게 있습니다.
- 상가에 대한 관리운영은 입주 후 관리운영위원회를 결성하여 수분양자가 책임지고 관리운영 하여야 합니다.
- 수분양자와 입점자 등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규칙에 위반됨이 없이 시설설치, 관리 및 유지하여야 합니다.
- 호실별 관리비는 시설간·구분소유자간 별도의 합의나 결정이 없으면 통상적으로 호실별 계약면적에 비례하여 부과합니다.
- 입주예정일 종료 후 일체의 유지보수 및 관리비용은 수분양·입점자의 부담과 책임입니다.
- 옥외광고물 설치 시에는 청주시의 기준이나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를 확인하시고, 청주시의 승인 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학원, 교습소 용도로 개업을 하고자 하는 분은 관할 교육청에서 면적, 용도 등의 인가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시기 바라며 수분양자·입점자의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수분양자·입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호실별 냉난방 사용요금은 호실별 적산전력계에 의해 부과됩니다.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 예술장식품, 조경, 설치물, 기타 단지 공동시설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및 관리 등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점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차량진출입구 등 각종 시설로 인해 도로점용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단지전체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의 환기설비, 주방용 배기덕트, 냉난방배관 등 입주 후 별도의 내·외부 시설 및 장치 설치시 반드시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각 호실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관리, 영업 인·허가 및 용도변경, 학교시설 저촉 등)과 인·허가에 따른 시설 추가사항 등은 수분양자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준공 후 영업과 관련한 소음, 냄새, 빛조명 등을 포함한 일체의 민원은 수분양자·입점자의 책임이며, 사업관계자에게 해결·중재, 보상을 포함한 어떠한 사항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건축 인·허가 상의 시설물, 자전거보관소 및 또는 조경수목이 근린생활시설의 영업에 방해될 우려가 있다하여 이전 또는 철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건물 내에 건립되는 공유 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개별 인테리어 공사는 입주예정일이 개시되고(임시사용 포함) 잔금 완납 후 가능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가 부과됩니다.
- 수분양자는 추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되는 관리규약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여야하며, 관리규약의 변경 폐지 또는 재설정은 입주 이후 구성된 관리단 집회의 의결에 따릅니다.
- 소방차 진입공간, 공개공지, 공용통로, 공용계단, 기계실, 주차장 등 공용부에 시설물 설치, 적재물 방치 등 일체의 사적점유를 금하며 관련법규, 해당지자체의 행정지도, 인·허가 사항, 관리위원회의 관리운영규약에 따라야 하고 이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수분양자 또는 입점자에게 있습니다.
- 경관조명 등 건물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홍보용 사인물 등)은 수분양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저수조, 우수 처리시설 등의 입주 후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단지 전체 공용요금으로 부과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는 목적물 인도 시 인수인계 예정이며, 이사용으로 운행 중 인테리어 파손은 수분양자 책임이며, 시행위탁사, 시행수탁사, 시공사에 하자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단지 내 타시설 이용자가 공동으로 사용 및 시설별 이용층이 지정되며, 준공후 수분양자들에 의해 구성될 관리단 등에 의하여 이용차량의 원활한 동선분리를 위한 지하주차장의 설계변경을 위한 차량 차단시설로 인한 주차대수 및 구획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공통행로 및 공개공지는 공공개방되는 시설로써 수분양자 임의로 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조경물 유지관리에 발생하는 비용은 수분양자의 부담입니다.
- 공용부 등의 설비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의 사용에 따른 전기료 등 유지관리비가 발생되며 이는 수분양자의 부담입니다.
- 각종 공동시설(전기실, 발전기실, 경비실, 방재실, MDF실 등)은 단지 내 다른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되며, 각종 장비 및 시설의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공동재산으로 관리운영됩니다.
- 단지 내 CCTV와 주차유도시스템용 카메라 등의 설치와 촬영은 방범기능 외 시설이용자, 입주자, 수분양자의 편의성과 안전을 위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관리를 위한 별도의 주차비 부과시스템 등은 설치되지 않으며, 이의 설치와 관리운영은 수분양자의 비용으로 별도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수운영합니다.
- 상가의 광고물 설치는 수분양자·입점자의 부담이며, 일부 호실은 외부구조물, 공간제약, 민원 등으로 설치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다른 시설의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 등)은 각 시설의 전용으로 계획되어 이용에 제약이 있으며, 이에 대한 사용 등 조정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예정일 후 인테리어 등 각종 공사, 장치·장식 및 제품의 이동 등을 위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시설물 이용에 관하여서는 관리운영주체의 관리하에 수분양자·입점자의 책임과 비용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손, 고장, 인적사고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해 사업관계자는 무관하며 무상수리, 보상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 후 사업관계자가 하자보수를 위한 AS실의 설치와 주차장 등 공용공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상업시설의 명칭과 행정상 건물명 등은 사업관계자에 의해 정하여지며 수분양자·입점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화장실의 공공개방과 이용은 해당지자체의 행정지도와 관리규약에 따라야 합니다.
- 단지 내 용역원 휴게실 등은 별도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 후 관리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별도 운영관리하여야 합니다.
- 건축허가상의 용도별 주차대수와 공용부 사용은 관리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실제사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인접하여 건설되는 단지간의 연결브릿지로 인해 발생되는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당해 건축물의 관리운영단간의 협의에 따라 부담하며, 사업관계자는 이와 무관합니다.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계단, 통로, 주차장 등 각종 시설은 단지 내 다른 시설별 운영주체간 협의 및 관리주체의 결정에 따라 운용·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통합운영대상 시설물 등은 시설별 운영주체간 협의에 따라 운영관리의 분담범위를 설정하여 비용을 부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 건물외벽에 시공사의 BI, 단지명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유지관리비용은 수분양자·입점자가 부담합니다.
- 안전, 시설물 훼손, 보안, 기타 관리주체의 시설 운영방침 등에 의해 수분양자·입점자의 일부시설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수분양자·입점자 차량의 등록 및 운영 등은 관리주체의 운영지침과 결정에 따릅니다.
- 계약체결 이후에도 사용승인 이전에는 호실내부 및 외부에 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개별 인테리어 공사는 입주예정일이 개시되고 잔금 완납 후 가능합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수분양자·입점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관계자에게 하자 책임을 물을 수 없고, 하자 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수분양자·입점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중 천재지변, 암반발견, 문화재 발견, 전염병, 정부의 정책, 국가적 대란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점지연 보상금액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 되거나 단지 내 다른 시설과 상이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공유 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 및 건축·교통 통심의 의견인 가감속 차로 설치에 따라 면적 감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는 사업관계자의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 후 수분양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완료하여야 합니다.
- 수분양자·입점자는 관계법령 및 인·허가 조건에 따라 적합한 용도로 운영하여야 하며, 용도제한 업종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계약전에 직접 확인하여야 하고 추후 이의 변경이나 보상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호실의 용도변경은 건축법, 당해지역의 지구단위계획과 해당지자체의 행정지도, 인·허가사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상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 소방관련(소화전, 스프링클러, 연결송수구, 제연경계벽 등)시설을 임의로 변경하면 소방법에 위반되어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 지자체 및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여 그 결과에 준하여 변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행위 및 비용은 수분양자·입점자의 책임과 부담입니다.
- 호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일체(영업개설 인·허가, 용도변경에 따른 시설물 추가 등 각종 사항)는 수분양자·입점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직접 수행하여야 합니다.
- 사업관계자는 일체의 업종보호, 업종중복 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업관계자와 무관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수분양자·입점자 상호간의 협의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제반 홍보물의 면적 및 세부내용은 인·허가과정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호실들은「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며, 대규모점포등록이 필요할 경우 수분양자·입점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생활환경 유의사항

- 단지 외부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간섭, 소음)오염 및 유해시설 등과 각종 주변 환경(혐오시설 유무, 도로, 조망, 일조, 진입로, 학교, 주변 상가 및 주거 등) 여건으로 생활환경 및 영업환경에 간섭과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사업관계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주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인근 시설물 및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근린생활시설 배치구조 및 층·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각종소음, 진동, 전자파, 전자기장애, 분진 등으로 영업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며, 이로 인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부지 및 주변은 위치 특성상 도로 인접 등으로 인한 교통혼잡,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민원 제기 및 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청약 및 계약 전 확인 하셔야 합니다.
- 각종 홍보물의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 답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외부 도시계획도로, 대지 경계 바깥 시설 및 녹지는 시공자의 시공구역에서 제외되니 단지 주변여건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위의 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서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선형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지 주변의 버스정류장 등 교통계획 및 횡단보도 등 교통시설물 설치 등은 청주시 계획 및 인·허가 등 행정지도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광고·홍보 유인물 (홍보 카달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도시계획 관련 시설 및 계획(학교, 도로, 공개공지, 교통계획 등)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추진예정 중인 사항을 발췌·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수분양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지구외의 도로 등 기반시설은 사업추진 중 일부변경, 취소 또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당해지구 주변의 도로 및 건축공사로 인한 소음 및 비산먼지,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물 주변에는 전력 지중화용 지상기기 및 노상시설물(전주, 가로등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사업지 주변의 계획(도로, 공공공지 등) 및 현황에 따라 단지레벨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 맨홀 등 인입 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인되며 관련 사업자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단지는 건축법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였으며, 단지 내·외 인접한 건물들과 건물의 요철, 입면장식, 각종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호수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배치상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오수 및 쓰레기 집하장 인접 호실 및 공용부에는 냄새, 소음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환경권, 영업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 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상층 건물 내·외부에 DA, 도시가스 관련시설, 소방관련시설, 통신관련시설, 전기관련시설, 맨홀, 점검구, 가로등, 환기구 등 기반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의 변경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 사업지는 생활숙박시설, 운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복합용도로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다른 시설별 소유자, 이용자와 대지, 건축물, 조경, 공지, 건축·기계·전기 설비 등을 공유함에 따라 생활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으니 계약 전 이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 사업지는 복합시설로써 해당 용도의 원활한 성능 발휘를 위해 설치되는 각종 시설(안전 및 각종 위해 방지 시설 등 포함) 등에 의해 소음 및 조망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층별, 배치별 입지와 인근건축물, 주차출입구, 법적 설치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가로등, 진출입 차량의 전조등 등에 의해 소음 및 진동, 냄새, 조망 등 환경권, 사생활 침해 및 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를 위한 CCTV, 주차장 카메라 등의 설치 및 촬영으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나, 수분양자 및 입점자의 방범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동의한 것으로 보며, 향후 이에 대해 민원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배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접 건물 및 당 건물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지는「힐스에비뉴 청주 센트럴(가경동 1416-1)」과 인접하며, 지상 2, 3층에서 연결통로를 통해 직접 연결됩니다. 주변 건축물의 인접 및 건축물의 신축, 개조 등의 건축행위로 인해 현재와 다르게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관계자와는 무관한 사항으로 관할관청 허가권자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변 건축물의 인접 및 건축물의 신축, 개조 등의 건축행위로 인해 현재와 다르게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관계자와는 무관한 사항으로 관할관청 허가권자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옥상 조경 식재, 휴게공간 등으로 인해 일부 호실은 소음 발생 및 사생활, 영업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와 인접한 호실에는 시설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출입구에는 기본적인 시건장치 외 별도의 출입통제시스템 등이 설치되지 않으니, 필요 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 수분양자 부담으로 개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본 건물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건물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영업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업종의 입점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소음, 냄새, 빛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사업관계자와 무관하며 이에 대해서는 수분양자·입점자 상호간의 협의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의 진출입로는 복합건물내 다른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며, 이용차량의 분리 등의 사유로 사업관계자가 임의로 차량차단기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차단기의 설치위치와 개수는 사업관계자의 판단에 따르며 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홍보물, 홍보관내 광고물, 모형, 도면 등에 표기된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행정지도, 법규변경, 시공여건 및 상품개선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휀룸, DA, 단지 내외의 조경시설, 수목, 단지 주변 레벨현황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혹은 전용부에 램프, 이동난간, 점자블럭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 제원, 개소 등은 관련법, 인·허가, 해당지자체의 행정지도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고 이의 변경이나 이동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의 형태, 크기, 위치는 향후 미술장식품 관련 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부 호실은 접근성, 조망, 소음등의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된 미술장식품은 인·허가 사항에 기준하여 사업자의 판단으로 설치한 시설로써 수분양자 등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호실 앞 식재, 미술장식품, 계단, 기둥, 기반시설 설치 등으로 조망, 채광, 출입과 간판가시성이 제한될 수 있으나 이의 변경이나 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방송 시설물로 인해 일부 점포의 경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설계 및 시공 관련 유의사항

- 본 사업지의 대지 경계선 주위 개발계획(조경, 토목, 기타 구조물 등의 계획일체)은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건축허가 변경이 수반 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변경 시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지반여건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수분양자의 동의 없이 시행위탁사 및 시행수탁사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의 경우 시행위탁사 및 시행수탁사는 수분양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의 경우 시행위탁사 및 시행수탁사는 수분양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준공 시까지 근린생활시설의 입점업종, 업태, 각 호실의 면적, 호실 위치, 보행 동선, 입면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 변경 시 수분양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분양 사업자가 관련 설계 변경 및 인·허가를 진행 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감도, 실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수분양자의 동의 없이 시행위탁사가 인·허가 진행을 포함)를 시행위탁사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지하층은 구조 안전성 향상을 위해 향후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하 층고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 시 확인하시길 바라며, 이에 대한 설계 변경 시 수분양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관계자가 관련 설계 변경 및 인·허가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는 단지 조화 등을 고려하여 식재의 위치, 규격, 수종,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 또는 시공과정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라 조경시설물의 조경 선형, 포장, 조경 시설물의 색채, 형태, 재료, 위치 등도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관련 인쇄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해당 관청의 인·허가 조건[건축(변경)허가, 교통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건축심의조건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및 비상차량 동선 등), 단지 내 조경, 부대복리시설, 공개공지, 수경시설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및 대지경계선형 등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상가 활성화, 성능개선, 시공성, 자재의 수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각 실 및 공용부 출입구의 사이즈,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계획은 향후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점 시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물 내 근린생활시설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 개발에 따른 고유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 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수분양자·입점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합니다.
- 실내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 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로부터의 전기, 통신, 맨홀 등의 인입 위치 및 우·오수배관의 위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 및 배치도의 대지경계선은 최종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의무가 수분양자·입점자에게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물내 조경,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수분양자·입점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건물 저층부 외벽마감은 당사의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목적물은 전용면적 산정 시 벽체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공동주택(아파트)에 비해 같은 전용면적이어도 실사용 면적상 차이가 있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소수점 2째 자리 표기하였으며 버림에 따른 오차는 임의의 호실에 반영하였으며 수분양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상기 분양목적물 설계도서는 분양홍보관 내 비치되어 있으니 방문하시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실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공용면적과 주차장, 관리실, 기계, 전기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지하주차장, 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은 공용 및 기타공용면적으로 하며, 해당면적은 호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였습니다.
- 대지지분은 용도별,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는 공급금액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합니다. 단, 각 호실 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 및 이로 인한 대지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분양가격을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대지지분에는 전체사업부지 내 공개공지면적에 해당하는 지분이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은 생활숙박시설, 운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영화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합 된 복합건축물로서, 인·허가 (교통영향평가) 사항에 따라 주차장 면적은 각 용도별 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하여 계약면적에 포함되므로 이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 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수분양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각 호실 내 기둥 및 벽체 등의 벽체공유면적은 계약면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실제시공시의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주차대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자 및 결로방지를 위해 내부 보호벽을 시공하여 실제 면적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일부 벽체 등은 피난동선의 안전성 확보 등의 사유로 비구조요소 설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면적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의 변경이나 보상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건물 외벽에는 실내 환기장치용 환기캡 및 보일러 연도 등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개공지가 조성되며, 위치와 크기 등은 관련법 및 인·허가 등 행정지도, 준공도서 등에 따릅니다.
- 24시간 개방된 보행공간이 조성될 수 있으며 이는 해당단지의 소유이나 전용공간이 아니어서 지역주민 등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시공시 인접단지 여건 또는 인·허가에 따라 경사도 및 레벨계획, 형태, 디자인, 선형, 바닥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 1층에 다른시설의 출입구가 계획되어 있고 근린생활시설 출입구와는 동선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내 자전거 보관대가 관계법령과 사업자의 판단에 의해 적법하게 설치되며 위치와 형태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고 이의 이전이나 제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내·외부창호의 프레임사이즈, 유리색상, 두께, 제품사양, 분할계획, 개폐방향, 오픈면적의 설치 등은 공사시 변경될 수 있으며 실별, 층별, 위치별로 각종 사양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건물 내·외부에 생활폐기물보관소, 쓰레기분리수거장과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인·허가권자와 협의 후 위치 및 개수가 선정됨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냄새,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접근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층별 이용과 배치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관리주체의 규약에 따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의 시설운영을 위하여 관리사무소가 설치될 수 있으며, 크기와 위치 등은 사업관계자의 판단에 따릅니다.
- 소방관련법령에 의해서 건물의 용도별 제연설비, 방화벽, 방화셔터, 방화문, 배연창이 전용 또는 공용부분에 설치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관련법령에 따른 방화벽 등 제반 설비를 임의 조정 및 불법철거를 할 수 없으며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 시 소방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를 해야 합니다.
- 소화전 위치는 법적 사항에 맞춰 그 위치가 계획 및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에 따른 간섭 등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용부 혹은 전용부에 돌출 또는 매립형의 소화전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부분 벽체두께가 증가될 수 있고 이에 대해 위치의 변경이나 보상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MD계획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추후 호실별 업체지정, 개별MD 변경에 따른 실내구획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수도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에 맨홀이 설치 되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수도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입(상·하수, 오·폐수, 가스, 전기, 통신 등)계획은 인·허가 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정압기가 설치되며, 정압기의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 입상 배관이 건물 또는 전용부 내·외부에 설치되어 미관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다른 시설과 분리 또는 혼재되어 계획되어 있으며, 차량진출입구는 공동으로 사용 됩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 등의 환기를 위해 단지 내에 DA, 그릴창, 실외기실, 환기관련시설, 공조실 등이 설치되며, 인접한 호실은 이로 인한 소음, 진동, 조망권, 환경권, 영업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에 법적 소방 시설인 옥내소화전 등의 시설물과 기둥 등 구조물에 의해 일부 주차면이 간섭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모형 및 배치도 상에 표현된 DA 위치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분진,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을 입을 수 있으며, 보행 및 진 출입시 바람, 소음, 매연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옥상 등에는 다른 시설이 사용하는 설비 장비류(냉각탑, 탈취기, 배기휀, 실외기, 공조기, 소화수조 및 펌프 ,제연휀 등)와 샤프트가 설치되어 있어 인접한 호실은 이로 인한 소음, 진동, 연무, 조망권, 환경권, 영업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상, 옥상 조경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수분양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옥외보안등 및 지하, 지상층 CCTV 설치 위치 및 갯수는 본 공사 시 기능과 감시 범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TV안테나, 무선통신중계기, 이동통신 안테나 등이 단지 내 설치되며, 설치 위치 및 규모, 형태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또한 옥상 및 건축물 높이에 따른 피뢰 설비가 설치되오니 인지 바랍니다.
- 관리사무소, 주차입구, 화장실 등 공용시설은 접근·이용의 편의상 형평성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건물의 저층부 주변에 휀룸 환기창이 설치될 예정이며 점검 시 작동되는 팬으로 인하여 소음, 환기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위치 및 개소는 건축 인·허가 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본 공사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 차이에 의해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차로 및 보행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 도로의 경사를 고려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소방법규와 시공성 개선, 행정지도 등에 따라 각 호실의 층고, 천장고, 설비위치, 창호 및 출입문 위치 및 크기, 개폐방향, 사양, 레벨 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호실내부에 기둥이 있을 수 있으며, 기타 구조물과 우·오수, 급·배수 배관 등이 위치할 수 있으니 청약·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물에 적용된 각종 입면, 마감, 색채 등에 관련한 디자인 일체는 사업관계자의 고유자산이므로 인·허가, 시공과정에서 수분양자의 동의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내·외부 기둥, 창문 및 출입문의 크기와 위치 및 유무는 변경되거나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용부분의 계획(계단, 주차장,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탑승위치 등)의 시공(디자인, 재질, 제원, 부속물의 설치 등)은 인·허가 및 진 도서에 준하며, 시공여건과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물의 레벨차이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주변 및 주차장 진입로 등의 도로경사도 및 레벨이 현장여건에 맞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승강기의 용량, 속도 등은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관계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승강기의 비상시를 위한 인터폰을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의 제원과 접근방식 등은 사업관계자의 판단에 따라 지정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기계설비, 전기 관련 배관,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공간 및 호실 상부에 위치하며 수분양자가 변경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 각 호실 내부에 기둥의 설치·돌출, 점검구의 설치, 설비의 관통, 소방법에 따른 옥내소화전 등 소방방재시설, 각 실 간벽, 기둥과 창호간 이격, 간벽과 창호와 기둥간 이격, 기타사유 등으로 실사용공간이 줄어들 수 있으니(dead-space 발생)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의제기나 보상금 청구 등은 불가합니다.
- 단지의 특성상 지상주차장은 없고 지하주차장은 단지 내 다른 시설과 층별로 구분하여 계획되었습니다.
- 단지내 일부공간은 비상시 사용 등을 고려하여 비상통로가 지정될 수 있고 보행동선과 차량동선간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전기차 충전공간과 시설, 조업차량공간은 사업관계자의 판단에 따라 설치유뮤가 지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 제거, 증설, 지정 등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시설계, 시공성 개선, 인·허가 및 행정지도, 정책변경 등에 의해 구조 및 설비, 외장 등의 형식, 공법, 부재규격, 시공절차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건물의 소방관련 시스템 및 설비는 본 시공 시 소방법 기준에 따라 허가도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물은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 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수분양자·입점자의 부담입니다.
- 본 건물 옥상 및 옥탑의 형태는 본 공사 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근린생활시설 호실간 벽은 경량칸막이로 시공되어 소음 및 충격음 전달이 개인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각종 기계설비, 덕트, 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을 공동 사용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공개공지, 옥상조경, 옥상에 설치하는 기계·전기설비(냉각탑, 급배기팬, 급배기구, 기계, 전기설비 등) 등에 의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물 형태 및 위치에 따라 외풍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전용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은 준공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건축물 준공 전 공사용 운행 등 시험운전을 거쳐 이관됩니다.
- 실내 공용부공간(엘리베이터홀, 화장실, 공용복도 등)에는 공용실내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여부, 위치, 개수 등은 사업관계자의 판단에 따릅니다. 입주 후 이의 운영과 관리는 수분양자·입점자의 비용과 책임입니다.
- 공용부 및 전용부 상부에 공동사용 또는 다른 시설을 위한 설비, 전기, 통신 등의 시설물이 관통할 수 있고 이로인한 소음, 공간활용 제약 등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의 이동, 보상을 요구하거나 훼손과 점검·기능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정압기, 계량기, 밸브 등의 시설이 단지 내 공용부 및 전용부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의 이동을 요구하거나 훼손과 점검/기능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조경, 식재, 보행 및 차량도로, 건축물 내·외부 마감의 색채와 재질, 패턴, 선형, 마감위치 등은 사업자의 판단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의 변경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각종 출입문, 손잡이, 프레임사이즈, 유리, 조명기구, 난간 등 일체의 하드웨어의 재질, 위치, 디자인, 개폐방향, 브랜드, 형태, 별도적용, 설치여부 등의 일체사항은 사업자의 판단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의 변경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관과 케이블, 트레이, 스프링클러, 환기관련 시설물 등 각종 설비가 설치되므로 일부 차량은 차량의 높이 등 차량제원에 따라 운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건축물의 지상 또는 지하에 무선통신을 위한 안테나, 이동통신사업자의 중계기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의 변경이나 보상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 내외의 공용부 인테리어 시공에 의해 외장장식, 입면몰딩 등 호실 내·외부면에 입면돌출 등으로 인한 제약과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이의 변경이나 보상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은 냉난방설비가 설치되지 않고 계절적 환경에 따라 환기부족, 결로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접하여 건설되는 단지간의 연결브릿지의 폭, 높이, 내외장 등은 준공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사업관계자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조명 외 일체의 냉난방 시설 등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인접하여 건설되는 단지간의 연결브릿지에는 구조물의 신축·팽창에 대응하는 익스펜션조인트(Expansion Joint)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의 철거,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고 임의로 훼손하는 등 기능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광고홍보물, 홍보관내 모형 등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 등의 사항은 준공도서에 준하며, 향후 설계가 변경될 수 있고 이의 변경이나 보상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냉난방설비, 비상발전기, 승강기설비, 실외기 등 시설에 대하여 작동 소음, 진동 및 미관 등의 사유에 대하여 일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배치 상 기계·전기실, 발전기실, 급배기구 오수 및 쓰레기 집하장 인접실에는 냄새, 소음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호실별 유의사항

- 호실별로 급·배수 배관이 설치되며, 급수배관은 계량기를 설치하고 밸브마감 처리하고 밸브 이후 공사는 수분양자 공사분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 호실에 별도의 온수배관이 없으므로 필요시 수분양자가 부담하여 별도로 온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주방 등의 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배수구 연결시 적절한 방법과 용량을 고려하여 배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시설설치(그리스트랩 등)하여야 합니다.
- 세탁소 등의 고온증기 또는 고온수를 사용하는 업종의 경우 직접 배수배관에 연결 할 경우 배관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호실별 전용실외기를 위한 별도의 공간이 설치되지 않으며, 이의 증설이나 추가확보 등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부에 냉매 배관 및 배선만 시공되며, 냉난방용 실내·외기 등은 사업관계자의 판단에 따라 설치될 수 있으나 이 경우 이의 변경이나 증설, 이동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일 수분양자·입점자가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증설이나 변경할 경우 실내기 및 실외기 등의 사양, 제조사, 용량 등은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결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냉난방을 위한 배관 및 배선, 제어시스템은 각 호실에 실별제어가 가능한 개별 냉난방방식(EHP시스템)으로 한 개의 실외기를 여러 호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며, 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각 호실 위치에 따라 실외기와 거리차이로 냉난방 효율과 대기시간 차이가 발생되며,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주방배기덕트는 구역별로 공동사용하는 방식으로 설비되며 구역의 지정은 시공성과 성능 등을 고려하여 사업관계자의 판단에 따라 지정되고 이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일 추가로 설치하거나 전용덕트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수분양자·입점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 각 호실의 주방용배기는 기본덕트배관(천장속 배기용 주덕트 및 풍량조절댐퍼)만 설치되며 식음시설 등에서 필요한 주방배기용 개별덕트배관, 팬, 메인덕트 연결, 후드, 댐퍼, 제어장치 및 수분양자의 사정으로 인한 연장시공, 용량추가, 성능개선 등은 수분양자의 부담이고 방화용풍량조절댐퍼(FVD)와 상업주방자동소화장치 등 소방법규에 맞는 장치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합니다.
- 주방배기공사로 인한 과도한 배기량에 따라 별도의 급기가 필요한 경우 수분양자·입점자가 부담하여 개별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각 호실 위치에 따라 관련설비와의 거리차이로 성능차이가 발생되며,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호실별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며, 가스시설은 각 호실 천장 또는 공용부 천장내 분기배관 및 밸브마감까지만 설치되므로 관련 인·허가, 계량기설치, 내부배관 설치, 공사비는 수분양·입점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이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호실별 전기용량은 전용면적 1㎡당 200VA로 설계되었고 이의 증설을 요구할 수 없으며, 호실별 증설이 필요할 경우 입주 후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수분양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각 호실별 공급전원은 3상 380V, 단상 220V로 배전되고 각 호실내 벽체에 분전함까지만 설치되며 이의 변경이나 추가공사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각 호실별 비상전원이 시설되지 않아 정전(순간정전 포함)으로 전원이 차단될 수 있으므로 호실별 통신 및 네트워크 서버 등을 위해 별도의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등을 수분양(입점)자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호실별 공급용량을 초과한 전기사용으로 인한 화재 및 정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공급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기기 및 장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본 시공 시 호실 내 분전반 및 통신 단자함 설치로 인하여 벽체 종류 및 해당 부위의 마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호실내 인터넷 접속 및 유선전화를 연결할 수 있는 통신박스가 설치되며 이의 변경이나 증설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호실에 따라 내·외부 창호, 출입문 등의 크기, 구성, 형태, 기둥의 유무 및 크기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각 호실별 내·외부 창들 및 창호에는 화재시 필요한 소방진입창치나 그릴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의 변경요구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호실내 환기, 배기, 급배수, 콘센트, 가스배관, 스프링클러 등의 시설물이 사업관계자의 판단에 따라 임의의 위치와 개수 및 용량으로 설치되며 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설비의 성능은 호실의 위치와 환경, 시공여건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전반, 각종 계량기 등은 분할된 호실별로 사업관계자의 판단에 따라 설치되며 위치조정 및 통합 등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각 호실 내 수도, 전기, 하수배관 등의 위치는 시공시 적절한 위치로 임의 설치되며, 개별적으로 위치의 이동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각 호실별로 창호, 문틀, 전기배선, 설비배관, 콘센트, 스프링클러, 수도계량기만 시공되며, 그 외 일체의 바닥마감, 천장마감, 벽체마감 등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 각 호실별 방범설비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각 호실의 바닥은 콘크리트 기계미장으로 시공(복도 높이보다 낮게 시공될 수 있음)되며 별도의 방수는 시공되지 않으니 물을 사용하는 업종을 비롯하여 수분양자·입점자는 바닥 최종마감재 설치전 방수공사, 배수구 주변 방수공사 등의 적절한 방수관련 공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각 호실의 전기, 급배수, 배기, 가스 등의 설비는 공급계약서 또는 유의사항에 명시된 설비만 공급하며 이의 증설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 호실 내부에 기둥이 존재할 수 있으니 수분양자가 계약 체결시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실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및 전용부 상부에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호실운영에 필요한 제반시설(진열대, 실내 상하수도, 각종 배관, 전기시설 및 간판 등)은 수분양자·입점자의 부담과 책임이므로 사업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휀룸, 실외기, 기타 각종 공용시설물과 동일층 혹은 층 상하간 면하거나 또는 인접한 실은 가동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생활환경 여건에 따라 유리창 및 벽면 등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개 이상의 호실을 1개로 구성하는 등의 사유로 호실간 칸막이벽을 변경하는 경우 일부 벽체는 소방, 구조 등의 사유로 변경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수분양자·입점자의 사정에 따라 내부구조의 변경(칸막이, 출입구, 조명, 스프링클러, 각종 설비 일체 등)을 포함한 건축, 전기, 설비, 소방, 인테리어 등 일체는 수분양자·입점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 호실 내 시각경보기등 소방관련 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호실의 경우 소방관련 인·허가 조건 및 관련법에 의해 전면부 또는 인접부에 고정식방화문, 방화셔터, 제연경계벽 등이 설치되며 이의 변경이나 이동, 보상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호실내 설치되어 있는 일체의 소방관련 장비 및 시설물은 임의로 훼손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수분양자·입점자에 있습니다.
- 공용복도를 면하고 있는 창호에 관련법 및 인·허가 조건, 행정지도에 따라 그릴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의 변경이나 보상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영업을 위한 시설공사는 사용승인 및 잔금 완납 후 입주지정기간 개시 이후 가능하며, 그 이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출입할 수 없습니다.
- 페스티벌가든 또는 테라스와 면한 호실의 창호는 접이식창호(폴딩도어)가 아닌 고정식 알루미늄 창호가 설치되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페스티벌가든, 이에 면한 외벽디자인, 각 부위별 마감재료, 관련 조경시설은 공사 중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테라스와 면한 호실의 경우 테라스의 사적 점용, 호실 확장, 영업, 물건 적치 등 수분양·입점자의 이익을 위해 사유화하거나 통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일부 호실의 경우 소방관련(방화구획, 제연구획, 급배기 기준 등) 인·허가 조건 및 관련법에 의해 호실간 벽체높이에 제한이 있으니 사전에 숙지하여 청약·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미숙지 등으로 인한 이의 임의변경이나 위반으로 인한 책임은 수분양자에게 있습니다.
- 일부 호실의 경우 소방관련(방화구획, 제연구획, 급배기 기준 등) 인·허가 조건 및 관련법에 의해 공용복도와 면하는 매장창호·출입문 시공 및 개폐면 제한과 통기형 디자인 적용, 출입문 시건장치 설치불가, 통기형 천장 설치 등의 제한이 있으니, 사전에 숙지하여 계약하셔야 하며 향후 미숙지 등으로 인한 이의 임의변경이나 위반으로 인한 책임은 수분양자에게 있습니다.
- 일부 호실의 경우 전용면적의 경계 및 지정호수 표기를 바닥에 별도의 선형재료로 표시할 수 있으며, 표시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훼손할 수 없습니다.
- 공용부 상부 천장은 준공도서에 기준하여 시공되고 해당지자체의 행정지도나 시설물 설치 등의 시공성 개선을 위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위 유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 사업관계자의 판단과 현장여건, 인허가, 해당 지자체의 행정지도 등의 사항에 따르며, 이의 변경이나 보상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사전점검

- 사전점검 실시여부는 사업관계자의 판단에 따르며, 수분양자 또는 그 대리인이 사업관계자의 승인 없이 입주예정일 및 잔금완납 이전 출입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 관련시설

- 장애자 램프 위치, 길이, 점자 블록 위치, 개소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은 지자체 관련 부서 협의 사항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보수절차는「건설산업기본법」및「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을 적용합니다.
- 하자판정은 사용검사(사용승인)를 위한 준공도서에 준하며, 이에 누락된 사항은 건물의 사용가능여부, 기타 판례, 관련전문가의 통상적 판단 등에 준합니다.

■ 관리형토지신탁

- 본 분양목적물은 시행위탁사 주식회사 청주고속터미널, 매도인 겸 시행수탁사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및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간에 관리형 토지신탁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이 분양대금을 관리하며, 수분양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며 이에 동의합니다.
- 본 사업은 시행위탁사 주식회사 청주고속터미널과 매도인 겸 시행수탁사인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이하 신탁계약이라 함)에 따라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이 공급하는 건으로서, 공급계약서상 매도인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은 신탁계약에 따른 시행수탁자로 공급계약서상의 모든 이행책임(매도인의 담보책임 등을 말하며 이에 한하지 아니함)은 신탁계약에 의거 시행위탁사 주식회사 청주고속터미널이 부담합니다.
- 수분양자는 분양목적물에 대하여 주식회사 청주고속터미널,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간에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체결되었고 본 분양공고는 위 신탁계약에 의한 이행 행위임을 인지합니다.
- 신탁계약에 의거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은 위 표시재산에 대한 매도자의 지위를 가지는 자로서 현존하는 신탁재산(현금) 및 신탁계약의 업무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며, 공급계약에 의하여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해약금반환, 입주 지연 시 지체보상금, 하자보수,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 등)는 신탁계약 위탁자인 주식회사 청주고속터미널이 부담하며,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에게는 책임이 없음에 동의합니다. 본 계약 내용상 상호 해석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시행위탁사 주식회사 청주고속터미널은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을 법적·행정적으로 면책시킵니다.
- 본 계약과 관련된 공급대금은 반드시 본 분양공고에 규정된 시행수탁사 겸 매도인인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공급 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보수책임(사용검사전 발생하자 포함,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 불량, 부착, 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 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은 관계 법령에 의거 시행위탁사 및 시공사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수분양자는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에 하자보수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수분양자는 본 재산이『신탁법』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신탁해지(일부 해지 및 일부 호실 소유권 이전 포함) 등의 사유로 시행위탁사 주식회사 청주고속터미널과 시행수탁사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간에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또는 분양목적물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 중 선도래 시점에 시행수탁사가 분양 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시행위탁사 주식회사 청주고속터미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귀속)됨을 수분양자는 인지하고, 추후 이와 관련하여 수분양자는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수입금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서 정한 대출금의 상환,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상환, 설계비, 감리비 및 그 밖의 부대사업비 등 해당 분양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며,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이 본 사업과 관련하여 수분양자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 및 의무는 현존하는 신탁재산(현금) 및 신탁계약의 업무범위 내에서 부담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수분양자는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주식회사 청주고속터미널은 본 사업관련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이 부담하는 채무 및 의무 일체에 대하여 실질적인 그 채무와 의무를 부담합니다.
- 수분양자의 분양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시행위탁사 주식회사 청주고속터미널이 하기로 하며, 미발행으로 인한 불이익은 주식회사 청주고속터미널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 시행위탁사인 주식회사 청주고속터미널의 신탁계약 상 위탁자의 지위가 양도되는 경우 수분양자는 이 사실을 통지받은 시점에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소유권 이전, 사업 정산 또는 신탁 종료 후 본 건 사업부지에 대한 신탁등기는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책임은 시행위탁사인 주식회사 청주고속터미널에게 있습니다.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은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공급계약서 작성 시 수분양자에게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수령하고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Ⅴ 기타사항

■ 감리자

구분	건축감리	전기, 소방 통신감리
회사명	선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선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표시사항

-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자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 부동산개발업 등록번호 : 서울 090057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 분양홍보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35-23

■ 분양홈페이지 : http://www.cheongju-centralcity.co.kr

■ 분양문의 : ☎ 1522-1343

■ [코로나19 관련 안내]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운영관련 협조요청에 근거하여 아래사항에 해당할 경우 분양 홍보관 입장이 제한됩니다.

- 홍보관 입장 시 마스크 미착용
- 열화상 카메라 및 체온계로 체온 측정시 37.5도 이상 시
- 기침 및 인후통 등 유증상 시
- 체온측정 및 기타 예방절차 불응 시
-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 홍보관 관람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분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분양홍보관 및 시행위탁사인 주식회사 청주고속터미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이 광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현장 및 분양홍보관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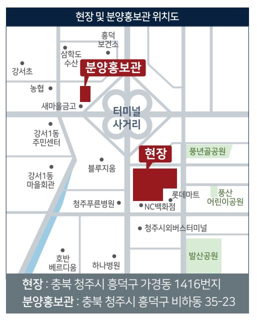

현장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416번지
분양홍보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35-23

분양문의 **1522-1343**

시행수탁 무궁화신탁 시공 현대엔지니어링 시행위탁 (주)우민 (주)청주고속터미널